

## 공 시 송 달(보상협의) 공 고

영광군에서 시행하는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,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사업시행자 : 영광군수

2. 사업의명칭 :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

3. 공고사유 :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

4. 공고기간 : 2020년 12월 14일 ~ 2020년 12월 29일

5. 협의기간 및 장소

○ 기간 : 2020. 12. ~ 2020. 12.

○ 장소 :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(안전관리과)

(T: 061-350-5684, F: 061-350-5122)

6. 보상시기 · 방법 및 절차 :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, 보상금은 우리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, 소유권 이외의 권리(압류, 가압류, 근저당, 지상권 등)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.

7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

- 인감증명서(매도용 1통, 매수자 : 영광군) 1통
-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내역 기재) 1통
-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, 인감도장

8. 토지 등의 표시 : 붙임내역 참조

2020. 12. 14.

영 광 군

